

청약과 관련한 CISG규정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통신에 유엔전자협약 적용시 유의사항

오 세 창*

-
- I. 문제의 제기
 - II. 유엔전자협약의 특징
 - III. 청약에 관한 양 협약규정의 개요
 - IV. 청약과 관련한 CISG 규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통신에
CUEC 적용 시 유의사항
 - V. 결론
-

I. 문제의 제기

점증하고 있는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 바람직한 정도의 법적명확(legal certainty)과 예측성¹⁾(predictability)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통일법의 제

* 계명대학교 통상학과 교수

1) A/ CN. 9/ WG. IV/ WP. 95. para. 8, A/ CN. 9/ 509. para. 30, A/ CN. 9/ 571. para. 56

정을 통해 국제전자상거래의 촉진은 물론이고 기존의 국제무역법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통신의 법적장애(legal obstacles)를 제거할 필요성이, 즉 계약을 위해 어떠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던 기능적 등가성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기술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기존의 법리를 적용할 경우 불투명한 문제들을 입법적으로 확고히 밝힘으로써 국제거래에서 전자적 통지의 사용을 증진하는 효과를 추구할²⁾ 필요성이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l Contracts: CUECUC: 유엔전자법 또는 전자협약 또는 협약이라 한다)”의 제정동기이자 목적이다.

2005년 11월 23일자로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통신의 사용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채용된 후 2006년 1월 16일부터 2008년 1월 16일까지 16조의 규정에 따라 유엔회원국을 상대로 서명국들에 의한 비준, 승낙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서명 작업을 위해, 비 서명 국가들에 의한 가입을 위해 개방하고 있다. 2008년 1월 16일 현재 2006년 2월 27일자로 중앙아프리카의 서명에 이어 서명 마감일인 2008년 9월 16일 한국이 서명하여 18개국이 서명하였으며 협약 규정 23조에 따라 세 번째 비준, 승낙, 승인 또는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6개월 만기 다음달 첫째 날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³⁾.

전자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인 1조 1항에 따라 상이한 나라에 영업장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 성립과 그 이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전자통신에 전자협약의 적용은 물론이고 CUEC 제 20조 4항과 19조 2항에 의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l sale of goods: CISG)의 적용을 제외하기로 선언하지 아니하는 한 CUEC 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CISG 1장의 적용범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 통신에, 그리고 CISG의 가입에 관계없이 CUEC의 1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통신에 전자협약의 적용 등 그 적용범위가 확대 지향적이다.

2006년 12월 2일 현재 70개국이 비준한 협약으로 유엔국제 무역법위원회

2) 오병철, UNCITRAL 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영향, 비교사법, 제 13권 4호, p.85

3) 오세창, 유엔전자협약의 제정과정과 이해, 계명대출판부 2006. pp.9-10

의 대표적 명작이자 가장 성공한 국제협약⁴⁾이라 할 수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통신과 관련이 있는 25개의 CISG규정 가운데 특히 CUEC가 적용될 경우 유효한 전자협약이 되기 위한 협약통신의 기준과 관련한 11조의 규정과 CISG상의 협약통신의 기준에 관한 14조와의 조화문제, 청약의 효력과 관련한 취소, 철회, 효력발생시기, 청약의 거절과 관련한 CISG 15조, 16조, 17조의 규정과 CUEC 10조와의 조화문제 등은 CISG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통신에 전자협약이 적용될 경우에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약 성립과 관련한 상기의 문제점에 따른 무역업자들의 전자통신거래에의 만전을 기하고,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한 업계에 기여의 도모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현재 CUEC에 관한 연구는 UNCITRAL산하 사무국에서 CUEC에 관한 공적인 해설서가 나오지 아니한 영향인지 모르나 협약제정에 다소의 관심을 가지고 학회에서 발표가 되고 게재가 되었으나 유엔총회에서 정식협약으로 채용된 이래 최근 발표된 논문으로는 남동현의 “UNCITRAL 전자계약법과 국제관할”, “UNCITRAL 전자협약상의 전자적 통지와 증거가치”, 오병철의 “UNCITRAL 전자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전자거래기본법에의 영향”, 이강빈의 “국제계약에서 전자통신의 이용에 관한 협약의 채택과 중재합의의 적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거래법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성은라양의 “UNCITRAL 국제 전자거래협약에 대한 전자기본법의 대응방안”, 등이 있으나 본 연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연구논문으로써, 국외논문으로는 Charles의 “The UNCITRAL Electronic Convention: Will it be used or avoided?”와 Roksana의 “Electronic Commerce Int'l Trade Law-especially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l Contracts and CISG”가 있는바, 본 연구와 관련이 있어 참고하고 있다.

국제경제학이나 국제경영학의 전공은 효과적으로 무역상무 전공을 수행하기 위한 전공교양일 뿐이며 진정한 의미의 무역상무의 이론적 근거는 UNCITRAL과 같은 국제기구가 제정한 국제상거래를 위한 통일 상법과 ICC

4) <http://www.cisg.law.pace.edu>

등이 제정하는 통일 상관습이요, 국내무역관계법을 중심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무역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가 무역실무이다. 따라서 무역상무의 이론과 실제의 연구대상인 국내외 무역관계법규의 제정과정의 이해 없이는 깊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없고, 다양한 연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40년 연구의 결론이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자협약초안단계에서 협약으로서의 채용의 전 과정을 4년간 18편의 논문과 두 권의 저서를 통해 연구해 온 논자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필요한 서명 작업을 받고 있는 전자협약의 규정을 청약과 관련한 CISG규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통신에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조화상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1장 문제의 제기에 이어 2장에서 유엔전자협약의 특징을 먼저 논하고, 3장에서는 협약에 관한 양 협약의 규정을, 4장에서 협약에 관한 CISG 규정 하에 CUEC 적용 시 유의사항을 각각 논한 후 5장에서 결론을 맺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아직은 사례가 없기에 문헌자료 분석 방법을 채택 하였다.

II. 유엔전자협약의 특징

상거래와 관련한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의 결과로서 예술의 상태⁵⁾라 할 수 있는 전자거래에 대비하여 제정된 유엔전자협약의 특징과 25개조로 구성되어 있는 협약의 규정의 특징은 전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적용범위의 확대, 법적성격, 기타 법과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하에서 그 특징을 보고자 한다.

1. 적용범위의 확대

지금까지의 국제협약의 경우 특정규정에 대하여 격렬하게 의견이 대립할 경우 취하는 방식인 타협안으로 귀착되는 경우처럼 전자협약의 경우도 협약

5) Shaw M., Blanning R., Strader T., Winston A., Handbook on Electronic Commerce, Springer, 2000, p.3

적용의 광범위한 적용을 바라지 아니하는 국가들에게는 협약초안의 적용범위를 감소시킬 목적의 제외선언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에 확대적용을 원하는 국가들을 위해서는 출발점에서 가능한 한 협약의 적용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협약적용을 위한 최상의 방법임을 합의한바 있다.⁶⁾ 이러한 합의에 따라 우선 1조 1항을 통해 자신들의 영업장소가 상이한 나라에 있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 성립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전자통신의 사용에 적용됨을 규정하므로 그 적용의 기본조건으로 적용범위의 지역성만을 강조함으로써 전자협약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관한 선언규정인⁷⁾ 19조를 통해 제한적용의 길을 열어주게 되어 결국 협약의 적용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많은 국가들이 기존 국제협약 가운데 특히 무역과 관련한 협약의 활용을 촉진시키는데 전자협약이 유용할 것임을 인식하길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희망에 따라 전자거래 발전에 기존국제법규들이 미치는 법적장애에 관하여 사무국이 조사 검토하여 제출한 문건⁸⁾이 있다. 이러한 문건에 따라 기존 국제법규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장애에 대한 가능한 공동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타 국제협약⁹⁾ 하에서 교환되는 전자통신의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기타 국제협약 하에서 교환되는 전자통신에 관한 규정인 20조가 규정되어있다. 동 규정을 통해 기존의 국

6) A/ CN. 9/ 571. para. 39

7) 전자협약 선언의 절차와 효과에 관한 규정인 21조의 1,4항은 19조 1항과 2항에 따른 선언이 언제라도 할 수 있게 되거나 수정하거나 철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융통성은 언제든지 수정, 철회, 선언 될 수가 있어 확인절차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이므로 원래 전자협약이 의도하는 법의 조화를 줄일 수 있다는 이견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견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W/G의 입장은 급격하게 변하는 통신기술이 이러한 융통성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Charles H. M., " The UNCITRAL Electronic Convention: Will it be used or avoided?", PACE INT'L L. REV. Vol. 17, 2006,2, p.263.

8) A/ CN. p/ WG. IV/ WP. 94 동 문건에 의하면 CISG와 CLPISG 등에 관한 보고의 내용이 담겨있다. A/ CN. 9/ 527. para. 31-71에 있음

9) 외국 중재판정 인정과 집행에 관한 협약(1958년 6월1일)
국제물품매매의 소멸시효에 관한 협약(1974년 6월 14일)과 그 의정서 (1980년 4월 11일)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1980년 4월 11일)
국제무역에 있어 운송터미널 운영인의 의무에 관한 유엔 협약(1991년 4월 19일)
독립된 지급보증서와 보증 신용장에 관한 유엔 협약(1995년 12월 11일)
국제무역에 있어 수취계정 양도에 관한 유엔 협약(2001년 12월 12일)

제무역에 관계있는 협약들마다 이들 규정들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통신의 법적인정과 효력에 관해 전자협약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다.

20조 1항은 동 조항에 열거된 협약에 의해 취급되는 분야의 전자거래를 활성화 하려는데 제정의 목적이 있지, 열거된 협약을 공식적으로 수정하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특정국가가 전자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그 나라는 1항에 열거된 협약과 관련하여 교환되는 전자통신에 전자협약규정의 적용을 즉시 자동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비준과 동시에 국제 상사법협약을 해석할 권한을 국내법정이 가진다는 인정을 전제하므로 국내법정에서 기존 국제협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통신의 법적인정과 효력의 문제에 대하여 국내법정 하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국내 해결방안을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동 규정은 기존협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에 전자협약의 적용을 위해 기존협약의 개별수정이라는 부담 없이 기존 국제협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통신의 법적장애 제거라는 전자협약의 제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¹⁰⁾.

특히 1항은 기존의 국제협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전자통신의 법적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전자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여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 할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¹¹⁾

이러한 1항의 보증 역할에 대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 1항에 열거된 기존 국제협약들 외에 2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규정들이 이러한 적용을 협약국이 제외시키지 아니하는 한 비 열거 국제협약, 조약 또는 협정서에서 취급되는 계약들과 관련하여 교환된 전자통신에 역시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2항의 단서규정을 통해 협약의 확대적용을 제외할 가능성을 부여한 것은 협약이 그러한 국가들의 기존 국제협약하의 의무와 모순 하는지 여부에 관해 먼저 확인하길 원할 수 있는 국가들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고려하여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항의 경우 전반규정은 기타 비 열거 협약에 전자협약의 적

10) Charles H. M., op. cit., p.272

11) A/ CN. 9/ 577. Add. 1. para. 49

용을 허용하려는 이른바, 포괄적 적용선언 규정이고, 단서 규정은 기타 비열거 협약에 전자협약의 적용을 제외하려는 포괄적 적용제외 선언규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자체가 전자협약의 융통성제고를 통한 확대적용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¹²⁾.

3항과 4항은 비록 특정국가가 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제외 선언서, 즉 포괄제외선언서를 제출하였다 해도 3항에 의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1항의 열거 협약에 특정 협약을 추가하거나 또는 4항에 의해 선언서 상에 명시된 특정 협약에 협약의 규정제외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들에게 허용함으로써 협약의 융통성을 가일층 제고 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되었다.

이렇게 볼 때 4항 하에서 이루어질 선언은 열거협약을 포함하여 기타 모든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관해 전자통신의 사용에 협약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선언임¹³⁾을 주의해야한다. 그렇다고 해서 20조가 일방 협약국이 기타국제 협약에 의해 취급되는 계약의 종류나 범위만을 제외할 가능성을 주기 위함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3항은 2항의 포괄적용선언에 따른 구체적인 특정협약에의 협약의 적용을 선언할 수 있는 포괄적 적용선언규정에 대한 구체적 적용선언규정이라 할 수 있고, 4항은 2항의 포괄적 제외선언규정에 비하여 1항에 포함된 열거협약을 포함한 모든 협약에 전자협약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확대 포괄적 내지는 구체적 제외선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를 요할 것은 전자협약의 적용제외와 관련하여 전자협약의 적용제외에 관한 규정으로 소비자 계약에의 무조건 적용제외와 특정금융시장 거래에의 적용제외, 그리고 아직도 권리증권과 유통증권의 월권적 복본의 발행가능성과 지참인에게 물품의 인도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일반적인 모든 양도가능증권 등은 관련 서류들의 특이성이나 독창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가 충분히 개발되어 검증되지 아니한 법적, 기술적, 경영적인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

12) 이를 두고 a negative or blanket, general declaration라 할 수 있다.(Charles H. M., op. cit., p.272)

13) 일종의 “Specific opt out” path라 할 수 있다.(ibd.)

수한 금융서비스 시장과 물류와 관련된 거래의 일체를 1항 b호와 2항을 통해 규정하므로 이들 거래를 협약초안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2조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19조의 규정은 역 제외(a reverse exclusion)¹⁴⁾, 즉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규정함으로써 협약국들이 제출하는 선언을 통해 특별히 명시할 수 있는 기타 국제협약에 전자협약의 적용을 20조 3항에 신설하고 아울러 특정협약이 적용되는 거래에 전자협약의 적용선언에도 불구하고 특정문제에 관해 협약초안의 적용제외 가능성을 19조 2항에 규정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21조의 선언에 의해 특수한 협약의 지배를 받은 특별히 명시한 문제점에만 협약초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특수문제를 제외한 기타문제에 특별히 명시한 비 열거 협약에 협약초안의 적용을 가능케 하였다. 따라서 19조 2항에 따라 특정협약의 지배 하에 있는 특정문제의 제외가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19조 2항에 의해 제외 선언된 문제의 결과는 그야말로 그 문제에만 협약초안의 적용을 제외케 하므로, 제한선언으로 인한 동 조항과 관련이 있는 특정 국제협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기타문제에 전자협약의 적용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신설된 20조 3항¹⁵⁾과 더불어 전자협약의 확대적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¹⁶⁾

그러나 주의를 요하는 것은 4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선언의 경우 특정기타, 즉 비 열거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관해 전자협약의 적용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특정 비 열거 협약이 지배하는 특정 형태나 범주의 계약에 만 적용제외를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¹⁷⁾. 역으로 3항의 경우 동 규정의한 특정선택적용의 경우 특정 비 열거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을 의미하므로 특정 비 열거 협약이 적용되는 특정거래 계약형태나 범주의 계약에 적용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선언의 효과 규정인 21조는 선언이 전자협약효력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선언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경과를 전제¹⁸⁾로

14) A/ CN. 9/ 571. para. 35

15) 일종의 “Specific opt out” path라 할 수 있다.(Charles H. M., op. cit., p.272)

16) A/ CN. 9/ 571. para. 45, 54

17) Charles H. M., op. cit., p.273

언제라도 선언과 수정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는 선언규정을 두고 있다.

유보에 관한 규정인 22조는 협약 하에서 선언 시 어떠한 유보조항을 전제로 서명할 수 있음을 금지하고 있다. CISG 98조 (유보의 금지)와 같이 이를 두고 Anthony Aulse는 진정한 전자협약의 해석규정이란기보다는 위장된 유보규정 선언규정이라 하고 있다. 왜냐하면 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CISG 92조, 95조, 96조와 같은 공식적인, 즉 명시적인 유보 선언규정과 같이, 21조에 의한 선언은 협약 규정의 적용에 있어 특정협약규정의 법적효과를 제외하거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ISG의 공식적인 유보 선언규정과 달리 위장유보 선언규정에 따른 선언은 21조 3항과 4항에 따라 언제든지 이루어 질 수 있다. 위장유보선언규정은 기타 비준하는 국가들에 의해 거절 또는 승인에 관한 CISG 94조(상호 유사한 법을 가진 복수국가의 비준)의 해석적 성격의 선언규정과 같은 공식적인 규정이 없다. 협약의 통일성을 해칠 정도로 이와 같은 전자협약의 선언기법의 사용은 각국의 승인을 촉진하려는 데 있다¹⁹⁾.

22조의 유보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언과 절차의 효과규정인 21조 2항, 3항과 4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언은 언제라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 적용과 제외의 가능성이 의외로 복잡할 수 있다.

UNCITRAL이 제정하는 법안의 표준규정(a standard provision²⁰⁾)인 당사자 자치의 원칙규정에 따라 전자협약이 거래자체의 재판관할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거래는 일국의 선언에 의한 적용제외를 통해 또는 전자협약 적용제외를 시도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제외를 통해, 합의에 의한 전자협약규정의 변형 또는 감쇄에 의한 제외 등을 통해서만이 당해 거래에 무효 될 수 있다²¹⁾. 따라서 당사자 자치의 규정에 의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전자협약의 적용이 배제 내지 변경, 감쇄가 가능하다. 그리고 2조에 규정된 거래에 협약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3조 효력발생 규정에 따라 가입절차를 필한 후 6개월 미경과의 경우 한

18) 21조 3항과 4항에 의하면 선언, 수정 또는 철회는 수탁자가 선언이나 수정 또는 철회 선언 통지를 수령한 익일부터 6개월 만기 다음달 첫째 날에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Charles H. M., op. cit., p.273

20) A/ 60/ 17. Para. 39

21) Charles H. M., op. cit., p.276

시적이거나 본 협약의 적용여부가 제외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유엔전자협약의 경우 기존의 국제협약 하에서 이루어지는 전자통신을 포함하여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전자통신에 적용되는 통일법이라 할 수 있다.

2. 법적성격

협약의 이중법 적용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계약 성립에 관한 일체의 실체법적인 규정의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과 새로운 협약이 갖추어야 할 규정을 제공하기 위해 적어도 최소한의 원칙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 간에 격론이 있었다.²²⁾ 이러한 격론에 대한 작업반의 결론은 무역법위원회의 결의에 따르기로 한바있다.²³⁾ 그러나 40차 회의에선 새로운 협약은 계약법 상에 명하고 있는 실체법적인 문제들의 명시 여부와 명시한다면 그 명시 범위, 그리고 명시 경우 계약 성립과 이행의 절차문제에 대하여 작업반의 지배적인 견해는 상거래 또는 상거래와 관련한 전자통신의 사용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실체법적인 문제를 다루어서는 아니 되나, 문제는 전자계약과 관련하여 절차문제와 실체법적인 문제간의 엄격한 구분이 항상 가능하거나 반드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데 공감했다. 왜냐하면 실체법적인 문제가 보는 관점에 따라선 절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러 가지 절차법적인 규정 가운데 당사자들의 위치, 데이터메시지의 효력, 데이터 메시지의 수신과 발신의 규정들은 절차규정이자 실체법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업적 계약체결을 위해 전자통신수단의 사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해답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능적 균등차원의 틀에 초점을 둔 초안에 구속되지 말고 필요한 실체법적인 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자협약의 규정은 절차규정과 실체법²⁴⁾ 규정을 모두 다루고 있다.

22) A/ CN. 9/ 509. para. 68-70

23) A/ CN. 9/ WG. IV/ WP. 95. para. 15

24) 절차규정으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10조, 19조, 20조, 21조 등을 들 수 있으며, 실체법 규정으로 4조, 7조, 8조, 9조, 10조, 11조, 12조, 13조, 14조, 17조 등을 들 수 있다.

3. 기타법과의 관계

최종초안을 검토한 38차 무역법위원회는 전자통신의 법적인정 규정인 8조와 관련한 토의에서 위원회는 1항에 대하여 42차 작업반 회의 때 규정의 성격상 종이통신과 전자통신간의 기능적 동질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functional equivalent)과 무차별 원칙(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에 관한 규정임을 지적한 바 있듯이 1항은 기능적 동질성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바, 이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MLEC) 5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²⁵⁾

그러나 MLEC에 근거하지 아니한 2항은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수많은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으로 당사자들이 전자통신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의무가 없음을 인정하는 규정임을 위원회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계약조건의 접속성에 관한 규정인 13조와 형식요건에 관한 규정인 9조 상에서 비준된 국제협약이나 조약을 포함한 제정법 또는 규제법과 판례법 그리고 절차법에서 전자통신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요구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자협약은 전자통신과 관련한 모든 법과의 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든 법에서 전자통신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무관계임을 규정하고 있다.

Ⅲ. 청약에 관한 양 협약 규정의 개요

청약과 관련한 청약의 기준과 청약의 효력과 관련한 양 협약의 규정을 개요하면 다음과 같다.

1. CISG

25) A/ CN. 9/ 546. para. 40

(1) 청약의 기준(14조)

청약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CISG 14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계약체결의 제의는 그것이 충분히 확정적이고 또한 승낙이 있을 경우에 구속된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으로 된다. 어떠한 제의가 물품을 표시하고, 또한 그 수량과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이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 제의는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

(2)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통지된 것 이외의 어떠한 제의는 그 제의를 행한 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는 단순히 청약을 행하기 위한 유인으로만 본다.”

CISG의 규정에 의하면 제의의 상대자가 특정되고, 또 제의의 내용이 품명, 수량, 가격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됨으로써 이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명되었으면 그것이 청약이 됨을 규정하고 있어²⁶⁾, 청약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의라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의의 표현은 전통적으로 청약(offer)이라는 표현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② 청약은 승낙이 있다면 이에 구속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야 한다.

상대방의 승낙에 따른 구속의 의사표시는 전통적으로 irrevocable 또는 firm 또는 청약의 승낙을 위한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의 존재가 청약을 일반적인 카타로그, 광고, 또는 단순한 조회등과 구별하게 하고 있다. 14조 2항은 일반대중 앞으로 이루어진 제의는 달리 분명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청약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광고는 조건이 상당히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청약이라 말할 수 없다.

26) Vienna 협약은 제의를 구분하고 있으나, Restatement는 offer와 proposal을 동일시하고 있다. (Restatement, § 22, 이하에서 Restatement를 Rest.로 표시함.)

③ 청약은 충분히 명확해야 하는 바, 그 명확성은 물품에 관한 설명, 수량 그리고 가격에 국한하고 있다. 기타 조건은 정해져 있지 아니해도 좋지만, 이 세 가지 조건은 정해져 있어야 한다. 명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물품의 설명에 관해선 물품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며, 수량과 가격에 관해선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결정되어 있거나 결정을 위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면 명확한 것으로 된다.

(2) 청약의 효력발생 시기(15조)

15조 1항을 통해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을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약인이 다른 수단을 통해 청약발송의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청약이 자신에게 도착할 때까지 피청약인은 청약을 승낙할 수 없다. 대개 이러한 원칙은 이론적인 관심일 뿐이다. 그러나 청약인이 청약의 발송 후에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청약이 피청약인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이 원칙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15조 2항을 통해 청약인이 청약을 철회하고 철회가 청약의 도달 전에 또는 청약과 동시에 피청약인에게 도달한다면 청약은 유효하지 못하다. 따라서 일단 효력을 발휘하면 16조 2항에 따라 취소불능이 되는 청약이라도 청약이 피청약인에게 도착한 것보다 늦지 않게 철회가 피청약자에게 도착하는 한 철회될 수 있다.

15조 1항과 18조 2항은 계약 성립에 관한 필수원칙규정이라 할 수 있다.²⁷⁾

(3) 청약의 취소(16조)

16조 1항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취소의 통지는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때, 즉 18조 2항에 따라 승낙이 도달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23조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때 종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원칙은 협약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에

27) A/ CN. 9/ WG. IV/ WP. 103. note. 58

만 적용된다.

구두승낙의 경우 승낙의 발신과 동시에 도달되는 동시성의 특수성에 따라 어느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해도 성립 시기는 같다. 그러나 도달주의로 하여 계약은 성립한다. 그리고 18조 3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그들 간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관행이나 관습의 결과로서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청약인에게 통지 없이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면, 승낙은 이러한 행위가 이행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한 때에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고 계약은 체결된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때, 즉 계약이 효력을 발휘한 때이므로 당연히 청약인의 취소권리는 이 때에 종료된다.

반면에 서면동의의 표시에 의해 승낙되는 전형적인 경우 이때 자신의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 청약인의 권리는 승낙이 청약인에게 도달한 때, 즉 계약이 체결된 때가 아닌 피청약인이 자신의 승낙을 발송한 때 종료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약은 일반적으로 취소가능이지만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면 16조 1항에 의해 취소불능이 되고, 18조 2항과 23조에 의해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착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승낙의 발송과 도착까지의 시간대는 청약은 취소불능이지만 계약은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말하자면 계약 성립 전 단계로서 청약자로서는 계약의 성립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이 이러한 과정을 경유하도록 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청약이 일반적으로는 취소 가능하지만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면 계약의 성립 전이라도 취소불능이 되게 하므로 청약을 일반적으로 취소가능으로 하는 영미법과 일반적으로 취소불능으로 하는 대륙법과의 절충의 결과이다.²⁸⁾

16조 2항 a호는 청약이 취소불능임을 표시하고 있다면 청약은 취소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약자의 입장에서선 자신의 청약을 취소하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피청약인의 입장에서선 청이 취소불능이 되기 위해 일체의 약속이나 행동이나 자세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취소불능에 대한 그 어떠한 약인도 필요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 규정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 특히 국제상거래 관

28) Secretairate Commentary on Article 14 of the 1978 Draft 4 and 5

계에 있어 피청약인은 청약이 일정기간 동안 유효함을 표시하고 있는 청약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함을, 즉 청약이 일정기간 동안 유효함을 표시하고 있는 청약인의 진술을 취소불능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함을 반영하고 있다.

청약은 다양한 방법으로 취소불능임을 표시할 수 있으나 가장 분명한 취소불능 표시 방법은 청약이 취소불능이거나 청약이 특정기간 동안 취소되지 아니할 것임을 또는 승낙을 위한 확정된 기간을 예컨대 “we offer firm until sep. 20, 1997” 또는 “The by that date”와 같이 표시하는 것이다.

16조 2항 b호는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으로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청약인이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청약자가 자신의 청약을 취소할 수 없음을 규정이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청약인이 청약을 승낙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특별히 중요하다. 이런 경우 청약이 취소불능임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해도 피청약인이 자신이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동안 청약은 취소불능이어야 한다. 여기서의 필요한 기간동안이란 합리적인 기간동안을 의미한다. (b)호의 규정은 영미보통법에서 말하는 일종의 금반언(禁反言)의 원칙(the principle of estoppel)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약의 취소가능성의 문제에 관해 영미법과 대륙법 간에 접근방법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상황 하에서 동 규정상의 합리적이라는 표현은 매우 다양한 해석을 낳을 우려가 있다.²⁹⁾

본 조항은 청약의 취소의 가능성에 관한 규정이면서 효력을 발생한 청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기도 하기에, 1항을 통해 청약의 취소가능성에 대해 영미법과 대륙법을 모두 수용하고 있으며, 효력을 발생한 청약의 유효기간에 대해 2항을 통해 영미보통법에서의 원칙인 합리적인 기간과 대륙법에서의 유효기간 명시시 경우 확정기간 동안 유효함을 공히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승낙을 위해 지정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유효하며,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8조 2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9) A/ CONF, 97/ 19, p.22

(4) 청약의 거절(17조)

17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청약거절의 법적 효력에 관해서는 어느 법을 막론하고, 청약을 거절하면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 즉 피청약자의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능을 상실(소멸)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법적 효력을 낳기 위해선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그러나 최초의 청약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계속 유효함을 청약자가 명시하거나, 피청약자가 청약을 지금 승낙할 의사는 없다 해도 앞으로 더 생각해 보겠다는 의사를 언급한 경우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청약은 계속 효력이 있다.³⁰⁾

그러나 본 조항에서는 특히 “청약이 비록 취소불능이라 해도”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일부 판례에 의하면, 선택권계약(option contract)의 경우에는 비록 거절이 있어도 선택권은 상실되지 아니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선택권에 대해서 고액의 대가가 지불되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예외로 한다 해도, 일반적인 상거래에 사용되는 확정청약이 거절되어도 상실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상인은 거절이 되면 다른 거래 선과 자유롭게 교섭을 시작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청약자가 변심해서 승낙하지 아니할까 하는 염려를 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본 조항은 명쾌하게 취소가능이건, 취소불능이건을 불문하고 청약은 거절에 의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단히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10일 간 유효한 확정청약의 경우 그 다음날에 거절을 하고 5일째 되는 날에 변심한 피청약자가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승낙이 최초 청약의 유효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해도 청약은 거절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승낙이라고 말할 수 없고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개 거절은 청약자에게 도착한 때 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거절의 도착 전에 빠른 방법으로 거절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거절의 통지를 편지로서 발송한 후 편지가 도착하지 전에 전화 또는 telex나 fax로써

30) Rest. 38(1, 2), Emanuel S. and Knowels, A., Contract, 1986, Emanuel Laws Outlines, p.39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한다.³¹⁾

2. CUEC

(1) 청약의 유인(11조)

전자협약상의 청약의 유인에 관한 규정인 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일인 이상의 특정 당사자들 앞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당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주문 신청을 위한 대화신청을 이용하는 제의를 포함하여 하나 이상의 전자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의는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러한 제의가 승낙의 경우에 구속된다는 제의를 한 당사자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자협약 11조 “청약의 유인”은 특정 당사자 앞으로 발신되지 아니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통신으로 계약을 해결하려는 제의는 청약의 유인일 뿐이다. 다만 승낙의 경우에 제의에 구속됨을 당사자가 그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유인이 아닌 청약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이 단서의 규정은 인터넷 경매나 그와 유사한 거래를 통해 물품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됨을 의미 한다³²⁾.

사실 MLEC, 미국연방전자서명법(the U.S. Federal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E-SIGN) Act(E-SIGN)이나 통일전자거래법(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상에는 이와 같은 청약의 유인을 다루는 규정이 없다. 반면에 CISG 14(2)항은 “1인 이상의 특정인 앞으로 된 제의 이외의 제의는 동 제의가 달리 명백히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라는 청약의 유인규정을 두고 있다³³⁾.

31) 新, 掘聰, 國際統一賣買法 同文館 1991. pp.32-33

32) 단서의 규정이 인터넷 경매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 적용을 위한 규정이라 추정은 “많은 법률체계에서 최고가 입찰자에게 물품을 매각하는 구속적인 청약으로 간주되고 있는 인터넷 경매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한 물품의 청약을 다루는 특정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없으며 현 규정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커버할 수 있다”는 작업반의 결론을 통해 할 수 있다.(A/CN. 9/ 571. para. 171)

그리고 청약유인의 개념이 특정 법률체계 내에선 알려져 있지 아니하므로 동 개념은 “청약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CISG와 같이 통일국제무역법에 청약의 유인이라는 개념이 흔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준수되어야 한다³⁴⁾는 작업반의 결론에 따라 청약의 유인의 개념이 사용되었다.

(2) 전자통신의 발신과 수신시기와 장소(10조)

전자협약상의 전자통신의 발신과 수신시기와 장소에 관한 10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통신의 발신 시기는 전자통신의 작성자나 그를 대신하여 전자통신을 발신하는 사람의 관리 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난 때이거나 전자통신이 작성자나 그를 대신하여 전자통신을 발신하는 사람의 관리 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전자통신이 수신된 때이다.

2. 전자통신의 수신 시기는 통신이 수신인에 의해 지정된 전자주소에서 수신인에 의해 검색할 수 있는 때이다. 수신인의 다른 전자주소에서 전자통신의 수신 시기는 통신이 동 장소에서 수신인에 의해 검색될 수 있고 전자통신이 동 장소 앞으로 발신된 사실을 수신인이 안 때이다. 전자통신은 통신이 수신인의 전자주소에 도달한 때 수신인에 의해 검색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전자통신은 작성자가 자신의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장소에 송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수신인이 자신의 영업장소를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수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영업장소는 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4. 2항은 전자주소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 3항에 따라 전자통신이 수신된 것으로 간주되는 장소와 다를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전자통신의 경우 발신을 내부전산망을 떠나고 발신자체가 발신타미널에 의해 신호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접근방법이 10조 1항의 발신타미널이라고 볼 수 있다. 작업반은 MLEC 15조 1항의 작성자의 관리

33) A/ CN. 9/ 571. para. 169

34) ibd.

를 벗어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때를 발신의 시기로 하는 입력기준을 주장하였고, 많은 논평자들도 법적명확성과 위험분담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들어 작업반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작업반의 지배적인 견해는 현 규정의 내용이었는바, 그 이유는 작성자의 시스템을 떠나는 것과 수신인의 시스템에 입력 간에는 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³⁵⁾.

10조 2항은 전자통신의 수신에 관한 확고한 규정보다 일련의 전제, 즉 가정으로 되어있다. 많은 법률체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으면서 MLEC에 근거한 국내법 규정을 반영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협약은 수신인에 의해 수신한 것으로 간주되어지기 위하여 전자통신을 검색할 수 있게 된 때, 즉 대부분의 법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본기준(the primary criterion or based rules)이자 객관적 기준(the objective test)인 입력기준(entry-based rules)보다 수신인의 능력에 근거한 전자통신을 검색할 수 있을 때³⁶⁾를 수신으로 간주하기위한 보다 엄격하고 분명한 요건, 즉 기준³⁷⁾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자협약의 수신 기준의 경우 비 지정 주소로 발신된 메시지의 수신을 위해 메시지가 검색할 수 있어야 하고, 전자통신이 그러한 주소 앞으로 발신된 사실을 수신인이 인지(실질적 요지주의)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MLEC와 비교해 볼 때 전자협약 하에선 단순히 부정확한 주소가 아닌 비 지정 주소 앞으로 발신된 메시지의 수신은 수신이라는 보다 엄격한 규정을 채용하고 있는 이유는 MLEC 채용 이래 보완 필터와 방화벽의 발달이 전자통신으로 하여금 수신인에게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³⁸⁾. 따라서 수신에 관한 원칙은 특정 전자주소, 즉 지정 주소를 사용하는 데 따른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합의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다른 주소 앞으로, 즉 비 지정 주소 앞으로 발신된 통신의 손실 위험을 부담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전자협약의 수신시기에 관한 원칙은 초안규정들 보다는 분명히 나

35) Roksana J. M., "Electronic Commerce in Int'l Trade Law-especially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l Contracts and CISG", University of Cape Town, 2007,2,15, p.75

36) Charles H. M., op. cit., p.291

37) 전게서, p.95

38) 전게서, p.185

은 편이다.

지정된 전자주소의 경우 수신에 원칙기준이 검색가능기준과 전제는 MLEC와 UETA의 수신원칙기준이 정보시스템에 입력기준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거하고 있다. 수신인의 비 지정 주소 앞으로 발신된 전자통신의 수신에 대하여서는 검색가능과 통신의 인지기준은 수신에 대한 원칙인 MLEC 정보시스템 입력기준 보다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전자협약상의 수신원칙은 통신이 잘못된 수신인의 전자주소 앞으로 되었으나 수신인이 알고 그 통신을 검색할 수 있을 때 수신으로 한다면 발신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UETA는 수신인의 비 지정 전자주소 앞으로 발신된 통신의 수신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아니하다³⁹⁾. 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시간측정에 초점을 두고 수신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하여 처리가능(process ability)과 같은 기타 요건들을 데이터메시지가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법에 맡기고 있는 MLEC 15조 2항과 같은 규정은 없다⁴⁰⁾.

그리고 발신과 수신에 관한 10조 3항과 4항의 원칙은 MLEC 15조 3항과 4항과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바, 6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위치의 영업장소에서 작성자가 전자통신을 보내고 수신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수신한 것으로 되어있다⁴¹⁾.

이러한 규정은 MLEC 15조와 UETA 15조의 규정과 동일하다.

IV. 청약에 관한 CISG 규정 하에 CUEC 적용 시 유의사항

이상에서 유엔전자협약의 특징과 개요를 통한 CUEC의 개괄적 이해와 청약에 관한 양 협약규정의 개요를 통해 CISG 하에서 이루어지는 청약과 관

39) Charles H. M., op. cit., pp.293-294

40) 전게서, p.157

41) 전게서, pp.50-51

련한 전자통신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전자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청약의 경우 CISG 상의 청약의 기준 규정인 14조와 청약의 유인 규정으로 청약과 관련한 규정인 CUEC 규정 11조와의 청약기준과 관련한 양규정의 조화문제,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CISG 15조의 규정과 전자통신의 발신과 수신 시기와 장소에 관한 CUEC 10조 규정과 관련하여 효력발생시기와의 조화문제, 그리고 CISG에는 청약의 철회와 취소 그리고 거절 등의 규정이 있는바, CUEC의 경우 전자통신의 청약과 철회, 거절의 규정이 없는바, 이런 경우 CISG 15조와 16조, 17조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의 철회와 취소 및 거절이 CISG의 15조, 16조, 17조에 따라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하는 청약과 관련한 전자통신의 철회와 취소 및 거절의 가능성과 그 가능 방법의 CISG의 해당규정과의 조화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청약과 관련한 양 협약규정간의 조화를 유의사항으로 하여 논하고자 한다.

1. 전자통신에 의한 청약의 기준

(1) CISG와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청약의 기준

굳이 전자협약의 규정이 아니라 해도 CISG 규정 11조와 13조 규정에 의해 전자통신의 문서성(서면성)이 인정될 수 있고, 6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으며, 9조 1항, 2항에 의해서도, 그리고 96조의 유보선언에 의해서도 전자통신의 문서성내지 서면성이 인정되고 있는바, 전자통신협약이 CISG 14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전자통신의 사용에 적용될 경우 청약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⁴²⁾

- a. 계약을 체결하려는 제의
- b. 구속의 의사
- c. 물품, 수량, 가격의 명확
- d. 수신인의 숫자적인 제한
- e. a~d의 요건을 갖추어도 13조 상의 계약조건제시를 해태하지 아니 할 것

42) <http://www.cisg.law.pace.edu/cisg/cisg-ac-op.1>

1996년까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위한 가장 주요한 국제 법으로는 CISG이었다. 그러나 과거도 지금도 여전히 성공한 법이지만 전자통신 사용 전에 초안된 것으로 전자통신에 적합한 용어나 개념의 사용은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 전자계약의 모든 사항에 적용되기가 어렵다⁴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통신에 의한 청약의 경우 CISG와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CISG 14조 1항의 기준 외에 13조 상에서 말하는 계약조건제시의 규정을 갖추어야 청약이 되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3조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약조건제시 규정은 동일거래의 이중법 적용을 피하고 전자거래 촉진을 기하려는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 각국의 국내전자법의 규정에 따라 전자통신에 의한 계약의 경우 이중법 적용을 피하고 전자거래 촉진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계약조건 제시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동 규정에 맞는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이거래 때의 경우 이미 인쇄가 되어있거나 인쇄되지 아니해도 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로서 이해되고 있지만 전자거래의 경우 이들을 강조하는 것은 종이거래와 전자거래가 다를 바가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자거래의 올바른 인식과 촉진을 위해, 경우에 따라선 종이거래 때에 소홀히 취급되고 있던 부분의 새로운 강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약조건제시는 필수가 아니고 국내전자법 상에서 요구하고 있다면 제시해야 하되, 쉽게 접근하여 확인한 후 계약의 성사여부를 결정짓도록 제시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계약조건에 관해 CISG는 14조 1항의 품질, 수량, 가격조건 외는 침묵하고 있으나 기타조건의 경우 추후협상이 쉽거나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나 이 모든 것이 결국 일방의 진술이나 기타행위에 관한 규정인 8조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협약은 국내법에 일임하고 있다. 따라서 CISG와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계약조건은 CISG와 같이 해결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어 CISG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바, Roksana도 이런 입장을 우려하고 있다⁴⁴⁾.

이때의 숫자의 제한은 1인 이상의 특정인의 수적제한을 의미함이 원칙이

43) Roksana J. M., op. cit., p.3

44) Roksana J. M., op. cit., p.67

나 경우에 따라선 일인이상의 특정다수라도 피청약자들이 모두 승낙할 경우 청약자가 수용할 수 있는 특정다수라면 특정다수도 문제가 없다. 문제는 전자통신의 특성상 생산량을 무시한 청약에 따른 승낙과 승낙에 따른 계약체결의 결과로 청약자의 계약이행불능, 아직은 가장공간의 문화는 매수인위험부담(caveat importer: let the buyer beware)이라는 측면에서 피청약자의 피해를 줄이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적인 제한은 반드시 일인이 아니면 몇 명의 특정을 의미하지 아니한다.⁴⁵⁾

계약조건은 a. b. c 조건이외의 조건, 특히 c조건이행과 관련한 조건일 수도 있고 a. b. c. d를 포함하여 기타 전통적인 청약상의 당사자들의 주된 관심이 되는 청약 7대조건과 이들 조건이행과 관련한 조건일 수도 있다.

(2) 독자적으로 사용될 경우 전자통신의 청약의 기준

대화식·비대화식에 의한 청약의 구속성 여부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표준 관습이 없기 때문에⁴⁶⁾ CISG 14(1)와 같은 전자통신의 청약의 기준이 없다 해도 CISG와 관련하여 전자협약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CISG와 별도로 전자협약이 사용될 경우 전자통신의 청약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상기 CISG하의 전자통신에 의한 청약기준을 따른 경우 청약이 된다. 왜냐하면 CISG 9조의 규정에 의해 CISG는 통일된 거래관습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⁷⁾

2. 전통적인 영미보통법상의 firm⁴⁸⁾ offer 내지는 irrevocable offer⁴⁹⁾에 생산가능량(이행가능량)에 상당하는 피청약자 앞으로 청약되어야 한다는 조건(일인 이상의 특정인 또는 특정다수), 그리고 상기1)의 e요건을 갖춘 전자청약은 청약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firm offer 상에는 전자통신에

45) Chissick M., Electronic Commerce Law and Practice, Sweet & Maxwell, 1999, p.53

46) A/ CN. 9/ 538. para. 117

47) CISG가 통일거래 (매매, 상)관습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Schmitthoff 교수의 주장에 입각하여 주장할 수 있다.(Schmitthoff. C. M., Int'l Trade Usage, 1987, ICC, pp. 26-29)

48) a. offer 표시, b irrevocable firm 표시, c 7대 조건표시, d 경우에 따라선 7대 조건 이행과 관련한 거래조건이 인쇄되어 있다.

49) 미국에서는 양자의 구분이 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firm과 irrevocable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

의한 청약의 경우에 필요한 수적제한과 계약조건제시 요건이 결여되어 있기에 이의 보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②에 의한 전자통신 청약기준은 어떤 의미에서는 ①의 청약의 기준보다 더 완벽해 질 수 있다. 왜냐하면 품질, 수량, 가격 외 기타 조건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3. 인터넷 경매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의 청약을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는 11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승낙의 경우에 제의에 구속됨을 당사자가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을 경우에는 청약의 유인이 아닌 청약이 될 수 있다⁵⁰⁾.

이렇게 볼 때 전자통신에 의한 경매 청약과 같은 경우 구속의 의사를 강조하고 있는바, 이는 이 조건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조건은 중요하지 아니하다거나 이 조건이 전자통신 청약의 유일 기준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이중법 체계의 적용을 방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촉진을 위해선 승낙의 경우 구속, 즉 이행을 하겠다는 또는 할 수 있다는 책임 있는 표현의 다수대중을 상대로 일시에 청약이 가능한 전자통신의 경우 다른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조건이 다 명시되어 있어도 이 조건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청약의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청약의 유인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동 표현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많은 일반대중 앞으로 동시에 전달이 가능한 전자청약의 특징상 일시에 주문 내지 승낙을 해오면 일정한 채고 내지 생산력 밖에 없는 매도인의 경우 이행불이행이 되므로 계약위반이 될 수 있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청약과 청약의 유인간의 구분의 중요한 기준이자 매도인 보호차원에서 구속의사 기준을 청약과 청약유인간의 중요한 구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구속의 의사표시가 전자통신에 의한 청약이나 청약의 유인이나의 구분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외 조건의 경우 한두 개의 조건이 누락되어있다고 해서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구속의사의 분명한 표시는 firm, irrevocable, 유효기간 등 전통적인 구속의사표시 외에 “최고가 입찰자 1명에 한함”과 같은 표현은 구속의사의 좋은 표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고가 입찰자 1명에 한함”의 조건으로 다수

50) Charles H. M., op. cit., p.295

앞으로 되었다 해도 결국 승낙의 효력은 1명에 국한되고 이 숫자는 바로 청약자가 이행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속의 의사는 비단 인터넷 경매나 이와 유사한 거래가 아닌 이미 지적인 청약의 경우에도 전자통신의 특성상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전자통신에 의한 청약의 유인

상기 (1), (2)의 요건 결여의 경우가 청약의 유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으로 인정하고 거래하고자 한다면 피청약자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 성립을 위한 자동정보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인 12조는 자동메시지 시스템과 자연인간의 대화식이나 자동메시지 시스템 간의 대화식을 통한 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11조는 주문을 하기 위한 대화식 신청이라는 단순한 청약을 한 사실만으로는 대화식 신청시스템이 완전 자동여부에 관계 없이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주문이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구속의 의사를 전제로 함을 거절하고 있음을 유의해야한다⁵¹⁾.

이에 비하여 E-SIGN 7001(h)는 “이들의 조처들은 구속되어질 사람에게 법적으로 귀속되는 전자대리인을 통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UETA 14조도 전자대리인과 개인 간 또는 전자대리인 간의 대화식을 통해 성립된 계약을 인정하고 있다⁵²⁾.

따라서 12조의 규정은 청약의 규정이 아닌 어떤 형태로도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이루어진 과정 하나하나의 적법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계약 성립을 인정하는 규정이지만 11조와 관련시켜볼 때 단서규정이 적용될 경우 12조에 의해서도 위에서 언급한대로 청약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51) A/ CN. 9/ 577/ Add. 1. para. 43

52) Charles H. M., op. cit., p.295

3. 전자청약의 효력발생 시기

(1) 전자통신의 발신시기

통신의 발신은 통신을 보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전자통신의 경우 기술상의 문제로 아무리 작성자가 통신을 발신하였다 해도 관리시스템을 떠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의미의 발신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전자협약의 규정에 의하면 전자통신 작성자나 대신하는 자의 관리 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전자통신이 떠난 때, 이러한 관리 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떠나지 아니한 경우는 전자통신의 수신된 때이다. 다시 말해서, 전자통신의 발신은 작성자나 그를 대신하는 자의 관리시스템을 벗어난 때이거나 이런저런 기술상의 문제로 관리시스템을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고 있을 경우 발신상태가 아니므로 언제 벗어날지 모르나 일단 벗어나면 바로 수신인의 관리시스템에 통신이 입력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통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바로 그 수신 때를 작성자나 그를 대신하는 사람의 관리시스템을 떠난, 즉 벗어난 발신의 때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떠난 때는 최종목적지 정보시스템이나 중개시스템에 도달 때(수신 때)이며, 작성자의 관리를 통신이 떠났음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입증방법은 읽지 아니한 상태가 바로 작성자나 그를 대신하는 자의 관리시스템을 벗어나 발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이다.

이렇게 볼 때 발신의 경우 전자통신의 특성상 발신과 동시에 수신되는 것으로 하여 작성자나 그 대리인의 정보시스템의 관리를 벗어난 때를 발신으로, 관리를 떠나지 아니한 때는 수신인의 정보시스템이 수신한 때를 발신으로 하는 상이한 발신표현방법에 따른 동일한 발신의 개념, 즉 동일한 사실의 양면성 개념⁵³⁾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10조 1항의 관리를 벗어남과 수신을 발신의 개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협약에 의한 전자통신의 발신시기 원칙이 전자통신에 의한 청약과 관련한 발신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53) A/ CN. 9/ 546. para. 77

(2) 전자통신의 수신시기

전자협약의 규정에 의하면 전자통신의 수신시기의 결정방법은 지정된 전자주소의 경우에는 검색할 수 있는 때⁵⁴⁾ (형식적 요지주의⁵⁵⁾)이고, 비지정 전자주소(수신인의 다른 전자주소)의 경우는 통신이 지정된 전자주소 이외의 주소로 발신된 것을 알고 그 통신을 검색할 수 있을 때⁵⁶⁾(실질적 요지주의⁵⁷⁾)이다.

수신시기를 정보시스템의 입력기준에서 검색기준으로 변경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신인과 정보시스템 간에 필요한 법적관계의 불투명과 예컨대 실제에 있어 전자통신의 반복상실을 초래하고 있는 스팸메일 차단이나 바이러스의 확산방지와 같은 회사나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보완성 내지는 유용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간구하는 조치들의 데이터 복구 능력에 관한 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⁵⁸⁾.

따라서 10조 2항에 의한 수신인인 경우 스팸메일 등의 차단을 막기 위한 방화벽, 보안장치 등으로 인해 메일의 수신인인 차단될 수 있기에 우편의 경우와 달리 도달의 입증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수신을 위한 지정전자메일로 발송된 전자통신의 경우는 수신인의 검색능력을 도달의 개념으로 하여 전자통신을 검색할 수 있을 때를 수신, 즉 도달로 하고 있으며, 수신인이 다른 전자주소 앞으로 발신된 전자통신의 경우 그 주소 앞으로 발신된 사실을 수신인이 안 때를 수신, 즉 도달의 시점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경우 10조 1항과 비교해 볼 때 전문상의 “검색할 수 있을 때”는 후문의 “... 그 주소로 발신된 사실을 안 때”와 같은 개념의 수신인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후문의 “... 안 때”의 의미는 “인지하고 검색할 수 있는 때”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동 규정상의 “인지 때”의 개념이 검색 할 내

54) UCC상의 도달주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55) 창을 여는 것=일종의 단순한 통신 도착확인 의미

56) 영미대륙법상의 요지주의에 해당할 수 있다.

57) 성은라, “UNCITRAL 국제 전자거래협약에 대한 전자거래기본법의 대응방안”,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6. p.103

58) 전게서, p.185

용인지의 개념이 아닌 검색할 수 있기 전에 전자통신메일이 그 주소로 발신된 사실을 인지한다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10조 1항의 전·후문의 규정을 동일하게 발신의 개념으로 하고 있음을 알 때 10조 2항의 수신인의 전자통신을 검색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상의 “·· 검색할 수 있을 때”를 후문의 “·· 안 때”와 같이 해석하기 위해선 “·· 안 때”를 “·· 알고 검색할 수 있을 때”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한다 해도 “검색할 수 있는 때”는 우편의 경우와 달리 수신인의 전자통신 처리능력을 기준한 개념이기에 이 개념대로라면 매우 포괄적 개념이 될 수 있기에 전자통신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신인이 자신의 지정전자주소 앞으로 발신인이 보낸 전자통신을 확인하기 위해 web창을 여는 순간을 비로써 검색할 수 있을 때로 해석하여 수신인 때로 하므로 비로써 우편에서 말하는 도달의 개념을 넘어 일종의 형식적 요지주의가 되어야 한다. 반면에 수신인의 다른 주소로 발신된 전자통신의 경우 해당 통신외의 발신자의 여러 통신 등이 발신되어질 수 있기에 해당 통신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선 web창을 열고 그 내용을 확인할 때를 수신인 때로 하므로 우편에서 말하는 도달주의의 개념을 넘어 실질적 요지주의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수신인 개념이 10조 2항의 경우는 동일한 수신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10조 1항과 달리 형식적 요지주의와 실질적 요지주의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전·후문이 상이한 수신표현방법에 따른 상이한 수신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자협약에 의한 전자통신의 수신시기 원칙이 전자통신에 의한 청약과 관련한 수신인 경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4. 전자통신의 철회의 가능성과 그 방법

(1) 철회의 가능성과 그 방법

전자거래에 있어 인정되어야 할 철회나 취소와 같은 실체법 규정이 전자협약에는 없는⁵⁹⁾ 상황 하에서 그 가능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CISG 15조 규정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지는 전자통신과 관련한 Pace대학 국제상사법연구소(the Institute of Int'l Commercial Law: ICL) 소속 CISG

59) A/ CN. 9/ WG. 10/ WP. 10. p.729. 31

자문위원회의 의견(CISG-Advisory Council Opinion: 이하 ACO라 한다)에 의하면 1항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말하는 “도달”(reach)이라는 용어는 전자통신을 유효한 서면통신과 같이 인정할 경우 동 전자통신이 피청약인의 서버(server)에 입력 완료된 때 상당하는 말이다. 즉 본 규정에서 말하는 도달이란 전자통신의 경우 피청약인의 서버(지정서버를 의미)에 통신이 입력 완료된 때를 본 규정에 따른 도달로 보고 있다.⁶⁰⁾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전자협약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여기의 피청약인의 서버란 피청약인이 지정한 서버만을 의미하나 전자통신은 지정서버와 비 지정 서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 형식적 요지주의를, 후자의 경우 실질적 요지주의를 각각 도달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본 의견에 의하면 전자통신 협약상에 말하는 지정서버의 도달의 개념에 해당하는 형식적 요지주의, 즉 검색할 수 있을 때, 즉 피청약인이 지정한 서버에 전자통신이 입력 완료되어 검색할 수 있는 상태만을 도달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피청약자가 수신통신을 위한 서버를 지정한 경우 전자협약과 일치하나 비지정의 경우와 이런 경우 도달에 대한 의견이 없다.

그리고 ACO에 의하면 2항과 관련하여 청약은 그것이 비록 취소불능이라도 청약이 피청약인에게 도달하기 전이나 동시에 피청약인의 서버에 청약인이 청약을 철회한다는 전자통신이 입력된다면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전자통신에 의한 철회의 전제조건은 이러한 입력 완료, 즉 검색할 수 있을 때 전자통신을 철회통신으로 인정함을,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형태의 성격을 띄는 전자통신형태로서 피청약인의 전자주소 앞으로 발신된 전자통신의 수령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 청약이 동의⁶¹⁾해야 한다는 의견이다.⁶²⁾

이러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는 6조, 8조, 9조를 통해 합의 또는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ACO의 의견에 대한 자체의 논평을 보면 다음과 같다.

15조 1항에 따라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유효하지 아니하며, 15조 2항에 따라 철회가 청약의 도달 전이나 동시에 도달한다면 청약은 철회

60) <http://www.cisg.law.pace.edu/cisg/cisg-ac-op.1>

61) <http://www.cisg.law.pace.edu/cisg/cisg-ac-op.1>

62) <http://www.cisg.law.pace.edu/cisg/cisg-ac-op.1>

회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전통적인 통신수단에 의하면 이러한 원칙은 피청약자로 하여금 청약보다 빠른 통신수단을 통해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게 하고 있다⁶³⁾. 예컨대 청약자는 통상우편으로 청약을 발송하고 그 후에 우편보다 빨리 피청약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fax를 발송함으로써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다.

(2) 제기되는 문제점과 대안

이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통신 수단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e-mail을 통해 발신되거나 웹사이트 또는 기타 EDI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 메시지보다 더 빠른 실질적인 통신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통신으로 청약한 경우 이 규정의 제정취지에 따라 더 빠른 수단을 통해 철회하고자 할 경우 철회를 위해 전자통신보다 더 빠른 수단이 없어 전자통신을 11조, 13조에 의해 인정한다 해도 규정의 제정 취지에 모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더욱 큰 문제로서 철회는 전자통신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청약은 종이로 작성된 전통적 편지로 작성되어 전통적인 우편을 통해 발신되는 경우에 실질적인 중요한 문제가 발생 한다는 것이다.⁶⁴⁾ 즉 청약은 전자통신으로 되고 철회는 더 빠른 수단으로 철회가 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청약은 전통적인 우편으로 하고 철회는 전자로 된다면 근본적으로 규정제정 정신과 맞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은 해결의 방안이 없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본 규정에 따라 전자통신을 인정할 경우 관념적인 차원에서 제기되는 하나의 어려움은 전자통신철회의 수신인은 종이통신의 경우와 달리 전자통신이 도달되는 장소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통신을 수령하는 수신인이 존재하는 장소는 실질적인, 즉 물리적인 개념보다 기능적 개념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자통신은 발신인을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서버에 입력될 수 있는바, 이럴 경우 중요한 문제는 동 메시지의 수신인이 동 메시지를 검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수신인의 존재가 중요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색할 수 있는 장소에 수신인이 물리적으로 존재

63) <http://www.cisg.law.pace.edu/cisg/cisg-ac-op.1>

64) <http://www.cisg.law.pace.edu/cisg/cisg-ac-op.1>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검색할 수 있을 때 그 장소가 수신인이 존재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15조에서 말하는 “도달(reach)”을 전자통신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생각 할 수 있다.

첫째로 들 수 있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전자철회통신의 수신인이 자신의 서버에 위치하자마자 동 통신을 읽을 수 있을 때(검색할 수 있을 때: 입력이 완료된 때)가 도달의 시기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그는 자신의 네트워크시스템상의 내부문제로 인해 자신의 서버를 통해 통신을 읽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자신의 영향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메시지가 자신의 서버에 도달하였으나 내부 문제로 인해 읽을 수 없다는 것이 피청약인에게 아무리 가혹할지 몰라도, 이러한 피청약인의 기술상의 문제에 대하여 청약인에게 그러한 위험을 부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경우 피청약인은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인터넷 서버제공자(ISP)를 선정하므로 또는 내부 통신기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기술기반 확충을 기도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자통신의 발신자가 이러한 위험을 부담해서는 아니 된다.⁶⁵⁾

이러한 사실은 결국 수신인이 자신의 서버상의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전자통신이 입력되어 검색할 수 있는 상태로 도달하였으나 기술상의 문제로 읽을 수 없을 때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피청약자에게 있으며, 철회의 통신은 이미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청약자는 철회통신이 입력되어 검색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들 수 있는 상황으로써 철회가 피청약인의 서버에 입력완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그는 자신이 철회전자통신을 수령하고 싶어 하는 의사표시가 역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철회전자통신을 수령하려는 피청약인의 자발적 의지는 전자철회통지가 피청약자에게 도달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피청약자의 철회전자통신 수령의 동의를 거래당사자들의 행위의 해석을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CISG 8조에 따라 증거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를 확인하는 길은 8조 외에도

65) <http://www.cisg.law.pace.edu/cisg/cisg-ac-op.1>

당사자들이 알았거나 당연히 알았어야 하고, 국제거래에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관련 특수한 거래에 관련된 형태의 계약당사자들에 의해 정규적으로 준수되는 거래관습과 관련하여 증거가 될 수 있는 바, 바로 이러한 사실을 9조 2항이 규정하고 있다.⁶⁶⁾

다시 말해서 아무리 철회하려는 전자통신이 피정약자의 서버에 입력완료되었다 해도 피청약자가 수령하고 싶어 하는 의사의 표시가 없다면 철회통신의 도달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피청약자의 수령의사표시는 철회통신이 피청약자에게 도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바, 이러한 수령의사의 표시는 8조와 9조 2항에 의해 입증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상황으로써 철회전자통신과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청약인의 이메일 주소가 철회를 담고 있는 메시지에 정확하게 명기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철회전자통신의 피청약자에게 도달여부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수신인의 서버에 입력 될 수 있으나 수신인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검색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는 바로 철회전자통신이 도달하지 아니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예컨대 정확한 이메일 주소는 “Thomas@company.com” 인데 발신자가 “Tomas@company.com” 로 한 경우이다. 이렇게 잘못 기재된 이메일이 Thomas의 서버에 가끔 입력될 수 있으나 그의 서버에 입력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서버가 “h”가 없는 Tomas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불착의 위험은 발신자에게 있다. 왜냐하면 Thomas씨는 부정확하게 명시된 철회전자메시지를 수령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끔 부정확한 주소를 가진 전자통신이 우체국을 통해 정확한 주소에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전달된 전자통신이 적기에 수신인의 주소에 도착한다면 철회전자통신은 유효하다. 이런 경우 수신인은 특수한 방법으로 부정확하게 발신된 이메일의 경우 동 이메일이 자신 앞으로 보내져야 함을 우체국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부정확하게 발신된 전자통신을 역시 수령하겠다는 자신의 일반적인 의사를 표시한 격이 된다.⁶⁷⁾

다시 말해서 부정확한 수신인 주소를 가진 전자철회통신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착되기 쉽고 이러한 불착의 위험은 발신자에게 있다. 그러나 수신인이

66) <http://www.cisg.law.pace.edu/cisg/cisg-ac-op.1>

67) <http://www.cisg.law.pace.edu/cisg/cisg-ac-op.1>

부정확한 이메일의 경우라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전자우체국에 표시한 경우 철회전자통신은 유효하다.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상황으로 15조 규정상의 “도착”과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피청약자가 전자통신을 처리하여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예컨대 모순된 컴퓨터상에 나타나는 전자통신문을 이해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피청약자가 정확하게 처리할 수 없는 전자철회통신이 피청약자의 서버에 입력 완료된 때 피청약자에게 15조에서 말하는 도달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피청약자가 그러한 전자통신 형태를 검색하려는 의지를 어느 정도 나타내는가이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피청약자는 전자통신을 일반적으로 수령하길 합의한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그는 그러한 형태로 그러한 주소 앞으로 발송된 철회전자메시지를 수행한다는 의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바, 이러한 형태의 동의표시는 역시 당사자들의 행위를 해석하기 위해 규정된 8조에 의해 해석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 간에 확립된 관행에 관한 9조 1항의 규정에 의해, 해석될 수 있고, 거래관습의 문제로서 청약자가 일정한 형태의 전자메시지를 수령하기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9조 2항이 적용될 수 있다.⁶⁸⁾

다시 말해서 전자통신이 도달하였으나 피청약자가 처리하여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의 메시지가 못되는 경우 도착의 여부나 그 책임 소재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이런 통신도 수령한 것으로 한다는 동의가 있으면 15조에서 말하는 도달되고 그 책임은 피청약자에게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메시지의 수령 동의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8조, 9조 1항, 2항에 의해 추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메시지를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고 동의가 명시적으로 하거나 8조, 9조 1, 2항에 의해 이러한 동의를 추정할 수 없는 한 불착이 되고 그 책임을 청약자에게 있다.

이상과 같은 철회통신도달시점과 관련한 불착위험의 구체적인 경우와 그 책임의 문제는 철회전자통신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상의 ACO의 의견과 논평은 전자통신협약과 관계없이 11조, 13

68) <http://www.cisg.law.pace.edu/cisg/cisg-ac-op.1>

조에 의한 전자통신의 인정에 따른 6조, 8조, 9조 등의 추정에 근거하여 청약과 관련한 철회전자통신의 유효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철회전자통신과 관련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전자협약과 관련시켜 볼 때 CISG와 관련하여 전자통신이 사용될 경우 상기 전자통신의 수신과 발신시기의 원칙에 근거하여 CISG 15조 2항에 의해 전자통신철회의 추정이 가능한 바, 검색 전 형식적 요지주의(영미법의 도달주의)이나, 검색하여 확인하기 전까지 철회가능⁶⁹⁾가 가능하고, 전자협약이 독자적으로 사용될 경우로써 준거법에 따를 경우 의사표시의 대원칙이 도달주의 이기에 철회가 장래 효력발생방지에 있기에 역시 15조 2항에 의해 추정가능 한 바, CISG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5. 전자통신의 취소의 가능성과 그 방법

ACO의 의견에 의하면 전자통신의 경우에 16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도달”의 용어는 전자통신을 유효한 서면통신과 같이 인정할 경우 등 전자통신이 피청약자의 서버에 입력완료 때에 상당하는 말이다. 그러나 취소의 전자통신이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신을 발신완료하기 전에 피청약자의 서버에 입력된다면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입력완료된 때, 즉 검색할 수 있을 때의 전자통신을 취소통신으로 인정함을,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형태의 성격을 띄는 전자통신 형태로서 피청약인의 전자주소 앞으로 발신된 전자통신의 수령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청약인이 동의해야하는바, 이러한 합의는 6조, 8조, 9조 등을 통해 합의 내지 합의사실 추정이 가능하다.⁷⁰⁾

1항에서 말하는 “도달”의 의미에 대하여 취소전자통신의 경우 피청약자의 서버에 입력완료 시점으로 보고 있는 의견에 관한 논자의 이견은 청약의 효력발생규정인 15조 1항과 관련한 본인의 의견과 동일하다.

이러한 ACO의 의견에 따른 논평은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은 피청약인이 자신의 승낙을 발신 완료할 때까지 청약인이 청약

69) 실질적 요지주의로 영미법 요지주의와 같다.

70) <http://www.cisg.law.pace.edu/cisg/cisg-ac-op.1>

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으로, 전자취소통신에 적용할 경우 피청약인이 자신의 승낙전자통신을 발송완료하기 전에 피청약자의 서버에 취소통지가 입력완료 된다면, 취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도달”의 효력에 관한 도달시점과 관련한 불착위험의 구체적인 경우와 그 책임 문제는 15조에서의 논평과 같다.⁷¹⁾

이상의 ACO의 의견이나 논평과는 달리 CISG와 관련하여 전자협약이 사용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취소할 수 있다면 청약자와 피청약자의 승낙통신에 대하여 검색할 때나 검색하여 확인할 때까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규정에 의해, 즉 16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해 승낙통신 발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반면에 독자적으로 전자통신협약적용의 경우로써 10조에 의해 청약이 될 수 있는 경우에 청약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CISG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사용될 경우로서 청약의 효력 발생 후 취소사유가 있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준거법에 따라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바, 청약자(취소권자)가 발신주의 경우 10조 1항에 따라 피청약자에 의한 승낙전자통신 발신(피청약자의 정보시스템을 떠난 때) 전에, 도달주의 경우 지정 전자주소의 경우 10조 2항에 따라 청약자가 승낙통신에 대하여 형식적 요지주의 시점인 검색할 수 있기 전에 또는 비 지정 전자주소 사용의 경우 검색에 의해 확인하기 전에, 요지주의 경우 지정 전자주소건 비 지정 전자주소건 관계없이 10조 2항에 따라 청약자가 승낙통신에 대하여 검색에 의한 확인하기 전에 청약자는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6. 청약의 거절 가능성과 그 방법

우선 CISG 17조와 관련하여 전자통신이 사용될 경우 ACO의 의견과 논평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도달”이라는 용어는 전자통신을 유효한 서면통신과 같이 인정할 경우 동 거절의 전자통신이 청약자의 서버에 입력 완료된 때에 상당하는 말이다. 그리고 거절의 통신이 청약자의 서버에 입력된 때 청약은 종료된다. 이렇게 볼 때 전자통신에 의한 청약거절의 통신의 전제조건은 이

71) <http://www.cisg.law.pace.edu/cisg/cisg-ac-op.1>

러한 입력완료, 즉 검색할 수 있을 때의 전자통신을 거절통신으로 인정함을, 다시 말해서 이러한 행태의 성격을 띠는 전자통신 형태로서 청약인의 전자주소 앞으로 발신된 전자통신의 수령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청약인이 동의해야 하는바, 이러한 동의는 6조, 8조, 9조를 통해 합의사실 내지 합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에 근거한 논평은 다음과 같다.

청약은 거절의 통신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종료된다. 전자통신의 경우 규정상의 “청약자에게 도달(reaches the offeror)”의 정확한 시점은 컴퓨터상에 얼마든지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피청약자는 청약 동의표시를 발송함으로써 더 이상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다. 만약 피청약자가 청약의 거절의 발신한 후에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경우, 청약 승낙의 표시는 청약인의 서버에 거절의 통신이 입력되기 전에 청약자의 서버에 입력되어야 한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도달”의 개념은 전자통신에 적용시킬 경우 거절전자통신 도달시점과 관련한 불착 위험의 구체적인 경우와 그 책임문제, 그리고 규정취지와 전자통신 인정의 결과 전자협약과의 마찰의 문제 등을 상기 15조의 언급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⁷²⁾

이상의 ACO의 의견이나 논평이 철회와 취소와 관련시켜 볼 때 전자청약 거절통신과 관련한 CISG 17조에 관련한 ACO의 의견과 논평이 전자협약 하에서 그대로 적용됨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도달의 개념자체가 요지주의의 개념으로 변경되어 전자주소지정의 경우는 검색할 수 있는 때, 비 지정 전자주소의 경우 검색에 의한 확인이 가능할 때를 의미하며, 발신메시지의 형태, 주소 등을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인 합의는 8조, 9조 등에 의해 추정이 가능하다.

72) <http://www.cisg.law.pace.edu/cisg/cisg-ac-op.1>

V. 결 론

이상에서 2005년 11월 23일자로 유엔총회에서 채용된 CUEC는 전자통신이 국제계약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법적명확성과 상업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그 제정의 목적에 두고 제정된 것으로, 전자 환경 하에서 일방 당사자의 위치의 결정, 전자통신의 수신과 발신시기와 장소, 계약 성립을 위한 자동메시지 시스템의 사용, 전자통신과 종이서류간과 전자인증방법과 수기서명간의 기능적 동질성 확립을 사용되는 기준 등을 주요한 규정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6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CUEC의 경우 20조 1항에 따라 CISG하에서 사용되는 통신에 전자통신이 사용될 경우 CISG 규정과 CUEC 규정간의 문제점으로 CISG하의 청약의 기준 규정과 CUEC 규정하의 전자청약 기준과의 조화문제, CISG 하에서 이루어지는 청약의 경우 철회와 취소, 그리고 거절 등이 가능하나 전자통신의 경우 철회와 취소, 그리고 거절의 가능성에 관한 규정이 없는바, 이런 경우 전자통신에 의한 청약의 경우 철회와 취소, 거절의 가능성 문제, CISG 하에서의 청약과 관련한 효력시기에 관한 발신과 수신 규정과 CUEC 하의 전자통신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발신과 수신 규정과의 조화문제 등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양 협약상의 청약과 관련한 해당 규정과 비교하여 유의사항으로 위에서 논하였는바, 전자통신에 의한 청약의 경우 독자적으로 사용되건 CISG와 관련하여 사용되건 관계없이 CISG 상의 기준이나 CISG 9조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전통적인 영미법상의 청약의 기준 외에 CUEC 13조의 계약조건을 추가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유효한 청약이 되며, 이러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청약의 유인이 된다.

CISG 하에선 청약의 철회와 취소 그리고 거절 등이 모두 가능한 바, CISG와 관련하여 전자통신의 경우 CISG 상의 철회와 취소, 그리고 거절의 규정에 따른 추정에 의하여 지정전자주소의 경우 검색 전⁷³⁾이나 비 지정 전자주소의 경우 검색에 의하여 확인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며, CISG와 관계없

73) 단순 요지주의 또는 형식적 요지주의, 광의의 요지주의라 할 수 있는 바, UCC상의 도달주의와 같다.

이 독자적으로 사용될 경우 준거법에 따라 의사표시의 대원칙인 도달주의가 적용되기에 수신 때인 검색전이나 검색에 의한 확인 전까지 철회가 가능하다.

취소의 경우 독자적으로 전자통신 협약이 사용될 경우 준거법에 따라 발신주의 경우 피청약자에 의한 승낙 통신 발신 전에, 도달주의 경우 형식적 요지주의의 시점인 검색할 수 있기 전이나 검색에 의해 확인 전에, 요지주의의 경우 지정이건 비지정이건 관계없이 검색에 의한 확인 전에 각각 취소가 가능하다.

거절의 경우 CISG와 관련하여 전자협약이 사용되던 독자적으로 사용되던 관계없이 CISG 17조에 관한 ACO의 의견과 논평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철회와 취소, 그리고 거절의 가능한 효과를 가져오는 발신과 수신 시기로 발신은 작성자의 관리 하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신이 떠난 때거나 아직 머물고 있는 경우 수신 때, 즉 검색할 수 있을 때 아니면 검색에 의해 확인할 때이며, 수신은 발신과 마찬가지로 검색할 수 있을 때 아니면 검색에 의한 확인 때이다. 이렇게 볼 때 발신과 수신 개념은 동시성의 개념에 근거하되 그 표현자체를 전자통신에 걸맞게 발신은 시스템을 떠난 때를, 수신은 검색을 기준한 형식적 요지주의와 실질적 요지주의를 표방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철회와 취소 그리고 거절의 경우 CUEC 상에는 해당규정이 없으나, 준거법과 CISG의 해당규정을 통해 추정 가능하나, 철회와 취소 그리고 거절이 모두 가능함을 추정할 수 있고, 청약 통신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한 발신과 수신에 관한 CISG의 규정 자체가 전통적인 발신주의, 도달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비하여 CUEC는 CISG 하의 발신의 표현을 전자적 표현으로, CISG 하의 도달의 표현을 전통적인 도달주의가 아닌 요지주의를 택하되 세분화 된 요지주의의, 즉 형식적 요지주의와 실질적 요지주의⁷⁴⁾에 해당하는 표현인 검색할 수 있을 때와 통신이 잘못된 주소로 발신된 것을 알고 그 통신을 검색할 수 없을 때와 같은 전자적 표현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전자통신에 의한 청약의 기준은 철저하게 CISG 내지는 전통적인 영

74) 정식 요지주의 또는 협의의 요지주의라 할 수 있다.

미보통법상의 청약의 기준에다 전자통신에 필요한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유효한 전자청약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전자통신협약이 CISG와 관련한 통신에 또는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통신에 적용이 가능하다 해도 특히 CISG와 관련해서 사용될 경우 양 협약 규정상의 청약의 기준과 효력에 관한 규정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에 이를 조화하기 위해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직은 수신자 위험부담원칙에 따라 피청약자가 청약자보다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성은라, “UNCITRAL 국제 전자거래협약에 대한 전자거래기본법의 대응방안”,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6
- 오세창, 유엔전자협약의 제정과정과 이해, 계명대출판부 2006
- _____, 전자통신에 관한 유엔협약초안의 개요, 경영경제지, 산업경영연구소, 2005
- 오병철, UNCITRAL 전자계약협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과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영향, 비교사법, 제 13권 4호, p.85
- 新, 掘聰, 國際統一賣買法, 同文館 1991.
- Charles H. M., " The UNCITRAL Electronic Convention: Will it be used or avoided?", PACE INT'L L. REV. Vol. 17, 2006
- Chissick, M., Electronic Commerce Law and Practice, Sweet & Maxwell, 1999
- Emanuel S., and Knowels A., Contract, Emanuel Laws Outlines Inc, 1986,
- Roksana J. M., "Electronic Commerce in Int'l Trade Law-especially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l Contracts and CISG", University of Cape Town, 2007
- Schmitthoff C. M., Int'l Trade Usage, 1986, ICC
- Secretairate Commentary on Article 14 of the 1978 Draft 4 and 5
- Shaw M., Blanning R., Strader T., A. Winston, Handbook on Electronic Commerce, Springer, 2000
- UN, UNCITRAL, "Legal barriers to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in international instrument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de." (A/ CN. 9/ WG. IV/ WP. 94)
- _____, "Legal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 Electronic contracting: provisions for a draft convention." (A/ CN. 9/ WG. IV/ WP. 95, 100, 103, 108, 110)
- _____, "Legal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 Electronic contracting: provisions for a draft convention-Comments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 CN. 9/ WG. IV/ WP. 96)
- _____,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on its thirty-eight session.” (A/ CN. 9/ 484)

_____,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on its thirty-ninth session.” (A/ CN. 9/ 509)

_____, “Report of the Working Group IV(Electronic Commerce) on the work of its fortieth session” (A/ CN. 9/ 527)

_____,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on the work of its forty-second session” (A/ CN. 9/ 546)

_____,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on the work of its forty-third session” (A/ CN. 9/ 548)

_____,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lectronic Commerce on the work of its forty-fourth session” (A/ CN. 9/ 571)

_____, “Draft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in International Contracts, Addendum: Background Information” (A/ CN. 9/ 577. Add. 1)

_____, “Draft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Comments received from 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 CN. 9/ 578/ Add. 16)

_____, “Report of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on the work of its thirty-eighth session” (A/ 60/ 17)

_____, “Text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 CONF, 97/ 19)

<http://www.cisg.law.pace.edu>

<http://www.cisg.law.pace.edu/cisg/cisg-ac-op.1>

CISG

Rest.

PICC

UETA

MLEC

E-SIGN

ABSTRACT

A Study on Notable Points in Mind for the Use of Electronic Convention to be Made under CISG in Connections with Offer

Oh, Se Chang

A motive and aim of enactment of 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in Int'l Contracts is based on need to eliminate legal obstacles that might arise under existing int'l trade law instruments and promote int'l electronic commercial transaction. But when it is used with related articles, 14, 15, 16, 17 for offer under CISG, one of the most successful conventions which produces substantive law for the unification of int'l trade, questions of practical importance, for example possibilities of withdrawal, revocation, rejection of offer, the extent of its criteria arise from therewith.

In conclusion, a effective electronic offer has to assure easily access and confirmation of trade terms besides criteria of offer under CISG.

An offer can be withdrawal, if electronic message of withdrawal has entered the offeree's server before or at the same time when the offer has reached the offeree but agreement expressly or impliedly, between the parties about type, format, email address is a prerequisites. Implied consent could be presumed through prior conduct or trade usages between the parties under CISG articles 8, 9. The term "have reached" correspond to the time which is able to retrieve the electronic message of withdrawal. But without express or implied agreement between them about electronic communication of type, format, email address, an offer can be withdrawal before or at the same time when it has entered offeree's other e-mail address and confirmed by his retrieval.

In case of the revocation, electronic message of the revocation is effective before the offeree's dispatching an acceptance. A prerequisite for the revocation by electronic communication is same as the above mentioned withdrawal except for concept of a time difference for reach.

In case of a rejection of offer, when a rejection by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entered the offeror's server, an offer is ended. But a prerequisite for the rejection by electronic message is same as the above mentioned withdrawal and revocation.

Key Words : electronic communications, process ability,
ultimate criterion